

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1. 제출자

-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.

2. 근거 법령

- 행자부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운용지침
- 행자부 읍면방재인력보강승인보완사항지침

3. 제안이유

- 지방분권, 균형발전, 지역혁신업무등 신규행정수요에 효과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천시지방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임.

4. 주요 골자

- “행정기관의 정원 797” 을 “행정기관의 정원 830” 으로 하여 33명 증원.
- 총계란 “813” 을 “846” 으로 함.

5. 검토 의견

-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23명 증원 및 읍면방재인력 보강으로 10명을 증원 승인 받아, 행정기관의 정원 797명을 830명으로 33명 증원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